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및 12월 동향

리더 메세지

『12월 Newsletter』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변화의 시대, 지배구조와 기회의 균형을 찾다」와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개정안 입법예고

회계투명성 제고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대

장기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처벌 도입

- ▶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제재수위가 비례해 높아지는 기간별 가중 부과체계* 도입

*(고의) 1년 초과 시 매년 30%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 시 매년 20% 가중

회계감시 기능 무력화 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

- ▶ 3대 위법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제재
- ▶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은 분식회계 조치 시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에 따라 허용된 최고 수준 제재 적용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 확대

- ▶ 개인 과징금 산정 시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으로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기준 확대
- ▶ 경제적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책임 회피 차단

내부감사기구의 자정 노력에 대한 제재 감면 확대

- ▶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실질적 교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 시 과징금 등 제재 수준 대폭 감면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25년 상반기 10건 포함, 총 192건 공개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공개 대상 기간	'25.상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19년	'15년~'17년	'11년~'14년	합계	
지적 유형	① 매출·매출원가	2	6	6	3	4	4	5	12	4	46
	② 투자주식	3	5	-	4	3	4	5	6	4	34
	③ 재고·유형자산	3	2	2	3	3	-	1	5	7	26
	④ 기타자산·부채	2	11	4	5	2	8	2	5	7	46
	⑤ 주석 미기재 등	-	3	2	3	3	11	2	9	7	40
지적사례 수 (합계)		10	27	14	18	15	27	15	37	29	192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지적 내용** - 같은 그룹 내 3사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했으나, 회사는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
- **감사인 시사점** - 지배구조와 경영진 교류 등을 종합 검토해 유의적 영향력 여부 판단
-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될 경우,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확보

재고자산 과대계상

- **지적 내용** -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 방해
- **감사인 시사점** - 생산 프로세스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필요 시 추가 감사절차 수행

개발비 과대계상

- **지적 내용** - 개발활동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 **감사인 시사점**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회사 제시 자료 검토
- 필요 시 합리적 확신 확보를 위한 감사절차 강화

변화의 시대, 지배구조와 기회의 균형을 찾다

변동성 시대, 위기를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이사회 역할

변화하는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이사회 4대 도구



인접산업 신호 탐지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인접산업의 위험신호·동향 조기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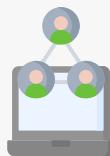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대시보드·히트맵)

자연재해·공급망 리스크 등 주요 변동요인 시각화



사전 대응기준 설정

리스크 성향 재점검·사전 대응기준 마련으로 기회·위협에 신속 대응



이사회 구성·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전환기 리더십 등 필요 역량을 갖춘 구성 및 지속적 역량 강화

혼란을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이사회 전략

AI 등을 통한 예측력·효율 향상



지식 공유, 벤치마킹 등 구조화된 학습체계 구축



조직가치 기반 판단으로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



전략적 제휴를 통한 新역량·성장기회 확보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디지털 기반 투명한 정보 제공

성장 기회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고려사항

- 조직은 혼란을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사회는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전략 논의에 시나리오 플래닝을 반영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인접 산업의 변화와 기회를 포착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새로운 역량·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전략적 제휴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 이사회 구성과 역량은 불확실성 대응에 적합하게 갖춰져 있는가?
- 조직의 학습·혁신을 지속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급변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신뢰를 유지할 효과적 소통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지배기구 고려사항

Q.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사회·감사위원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

자기주식 성격

- 회사는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배당권 등의 **주주권 행사 불가** 안 제341조의3제1항
- 자기주식은 교환·상환 대상 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 불가** 안 제341조의3제2·3항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분할신주 배정 금지** 안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자기주식 소각의무

-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내 소각 원칙** 안 제341조의4제1항
- 일정 요건(스톡옵션·우리사주 등) 해당 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 후 주총 승인 시 보유·처분 가능** 안 제341조의4제2항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매년 주총에서 갱신 승인** 필요 안 제341조의4제3항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 방법

-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에게 균등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제3자 처분 가능** 안 제342조제1항~제3항
-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안 제342조제4항



상장사 신탁취득 규제 및 처벌규정 신설

- 상장사의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도 동등 수준 규제 적용** 안 제542조의16
- 소각의무 위반 시 **이사에게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안 제635조제3항제9·10호

논의 배경*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엔 경영진의 이익 사유화 우려를 차단하여 신뢰 확보 필요
-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이나, 일부 법 규정은 자산으로 전제해 일관성 부족

신·구법 비교*

- | | |
|----|--|
| 현행 | 자기주식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한 활용, 일반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 존재 |
| 개정 |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내 소각 원칙, 기보유분은 6개월~1년 유예 후 동일 의무 적용 |

* 의안정보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지배기구 고려사항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지배구조 건전성과
시장 신뢰 강화



주주환원 효과 확대



주주 간 형평성 확보

시사점*

-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이 '권리 없는 자본'으로 명확해지며 자사주 활용 범위 제한
- 자기주식 보유 시 사전계획·관리 필요성 강화
- 예외적 보유·처분 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주총 승인 및 매년 갱신 의무로 절차적 부담 및 이사 책임 강화
- 신주발행 절차 준용, 균등처분 원칙 적용으로 우호지분 확보·경영권 방어 수단의 활용 여지 축소
- 기존 신탁 기반 자사주 운용관행 재점검 필요
- 자본정책·인센티브·M&A 등 전사적 전략 재정비 및 주주와의 선제적 소통 필요

사외이사 체크리스트*

- | | |
|--|---|
| •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 또는 보유·처분계획이 검토되었는가? | ✓ |
| • 보유·처분계획이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하며 주총 승인·갱신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 ✓ |
| •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신주인수권·주주평등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 |
| • 임직원 보상·M&A 등 예외적 활용 목적이 정관·내부규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 신탁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를 반영해 신탁계약·운용 프로세스가 점검되었는가? | ✓ |
| •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이 문서화되고, 이사 책임 리스크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이 확보되었는가? | ✓ |

* 의안정보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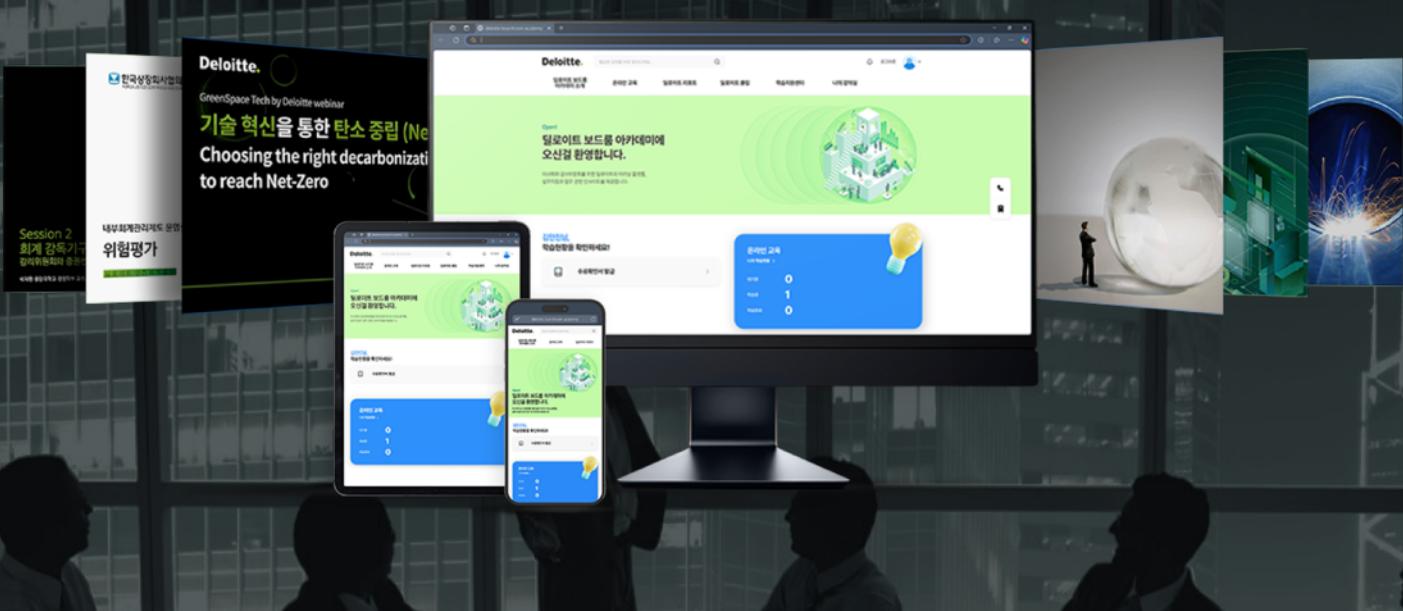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종합한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맞춤형 핵심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Director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Manager
juyeonlee@deloitte.com

이화연 Senior Consultant
hwaylee@deloitte.com

권예은 Senior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